

(전문위원 : 임령)

가. 제안배경 및 경과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4. 8. 27 의회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8호로 2004. 8. 30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방송본부의 사업에 CATV 방송을 추가 설립하여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시민생활정보, 건전한 문화·예술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내용임.

나. 세부사항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에서 2004. 8. 27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과 투자심사 완료 후 당일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임.
- 교통방송본부의 서울시 CATV 설립·운영계획보고에 의하면 향후 CATV 방송설립운영 시 시설비 87억원, 연간운영비 58억원, 인력 50명 증원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규모가 큰 사업으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한데도 그 동안 사업추진과정에서 공청회, 연구용역 등 실체적인 준비부족과 검증결과가 없었음.
- 또한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16호에 의하면 교통계획과장은 교통방송본부 운영의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CATV 방송설립과 관련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영의 지도·감독기관인 교통국의 견해가 전혀 없었음.
- 또한 CATV 사업은 일파성으로 끝나지 않는 계속되는 중대한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계의 충분한 사전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 공영방송으로서의 취약점인 시청률 제고 방안
 - 광고수입으로 자립운영 재원 마련 여부
 - 방송 초기 영상 콘텐츠 확보 방안
 - 기존 지역 CATV 방송의 시청률 저하로 인한 경영난 등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합·운영.
- 사전 CATV 설립에 관한 계획과 검토가 부족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통방송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교통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함으로써 시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를 “이 조례는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로 한다.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TV방송”이라 함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방송채널사업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을 말한다.

2. “뉴미디어”라 함은 인터넷, 디지털 방송 및 지하철 TV시스템 등을 말한다.
3. “방송제작진(스태프)”이라 함은 방송제작에 참여하여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전문진행자(전문MC)”라 함은 뉴스 또는 전문분야의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의 제목 “(방송운행)”을 “(방송의 편성 및 운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기본편성표를 작성·결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편성국장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편성책임자는”으로 하고, 동항 제1호 중 “SB”를 “스테이션브레이크”로, “협찬캠페인”을 “협찬캠페인·방송광고”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방송의 편성 및 운행에 대한 책임)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편성책임자 및 제4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운행에 대한책임자의 선임과 책임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프로그램의 외주제작)시장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자체제작이 곤란한 경우 또는 프로그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을 외주 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리포터 및 방송통신원)”을 “(방송제작진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리포터 및 방송통신원”을 “방송제작진·전문진행자·리포터 및 방송통신원(이하 “방송제작진 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리포터 및 방송통신원”을 “방송제작진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녹음편집”을 “녹음·녹화 편집”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방송광고 등)①시장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외에 뉴미디어를 통한 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수익사업 및 제휴사업)①시장은 방송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통방송의 설치목적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제공
 2. 프로그램의 민간공동제작
 3. 프로그램의 수탁제작 등

②시장은 방송의 질적 향상 및 공익성의 실현을 위하여 민간과 상호 협력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제휴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습득
 2. 방송기술의 공동개발
 3. 프로그램 보급의 확대를 위한 시장진출
 4. 기타 방송기술·업무와 관련한 제휴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책임자의 선임과 책임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중 “리포터·방송통신원”을 “방송제작진 등”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방송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